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문 화 재 보 호 기 금 법 시 행 령
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황희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내용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「문화재보호기금법」이 개정(법률 제18156호, 2021. 5. 18. 공포, 2021. 11. 19. 시행)됨에 따라, 해당 조문을 삭제 하는 등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조제8호”를 “법 제5조제9호”로 하고,
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금의 용도) <u>법 제5조제8</u> 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”이란 다음 각 호 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. <u>1.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</u> <u>긴급 매입</u> 2. ~ 5. (생 략)	제4조(기금의 용도) <u>법 제5조제9</u> <u>호</u> ----- ----- -----. <u><삭 제></u> 2. ~ 5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재청 국제협력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734